성주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2. 제정이유
 ○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 가. 성주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, 제4조)
 나. 성주생활문화센터 지원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9조)
 다. 성주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 ~ 제14조)
4. 참고사항
 가. 관련법령 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 나. 예산조치 : 19,000천원 정도
 다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2016. 3. 23. ~ 4. 12.)
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.
 마. 성별영향평가분석
 - 안 제11조 3항 위원회 구성시 양성평등기본법 재21조(정책결정 과정 참여)에 따른 위원회 구성 비율 반영
 - 별지서식 제3호 생활문화센터시설사용신청서에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(성인지통계)에 따른 성별란 반영
5. 검토의견
 ○ 본 조례 제정안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생활문화센터(구. 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)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
 ○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성주생활문화센터 시설 및 기능, 문화센터의 지원 및 위탁운영,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, 시설의 이용 등입니다. 본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「성주군금수문화예술마을설치 및 운영조례」는 폐지됩니다.
 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